

	보도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		
책임자	신진창 과장(2156-9850)	담당자	김준 사무관(2156-9859)
배포일	2015.12.16(수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1매

제 목 :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

- 금융위원회는 2015.12.16(水)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개정안을 의결
- 동 개정규정은 '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(15.7.22)에 따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,
 - 주택담보대출 중 '정상' 여신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총당금 적립률을 하향 조정*하고
 - * 현행 1%에서 0.5%로 하향 조정(2017년 12월 31일까지)
 - 기존의 일시상환방식(거치식 분할상환 포함)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방식*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(LTV)**을 그대로 적용함
 - * 상환기간 3년 이상의 분할상환방식(비거치식 분할상환, 부분 분할상환방식 포함) 대출로 대한·재약정(증액하는 경우 제외)하는 경우

**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(LTV) 규제

담보 소재지	담보유형	2014.7월 이전	현행(2014.7월 이후)
수도권	아파트	75%	70%
	주택 등	85%	
비수도권, 집단대출, 소액대출(5천만원 이하) 등		85%	

- 동 개정규정은 '15.12.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